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임지연*. 김계현**

I. 서론
I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 법 제정 배경 및 경과
2. 개정안 주요 내용
III.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쟁점
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문제
2.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
3.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4.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5. 영상정보 보안(안전 조치)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
IV. 결론

I. 서론

수술실은 병원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수술을 하는 공간으로, 감염, 수술 부위 오류, 마취사고, 출혈사고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률이 높은 환경이다. 또한 최첨단기구나 장비의 활용이 많고 수술환자의 경우 질병 중증도가 높은 경우가 많아 의료기관 내에서도 별도로 통제되고 관리되는 곳이다.¹⁾

2016년 성형외과 대리수술로 인한 사망자 발생을 계기로 의료사고 시 상대

* 논문접수: 2021. 12. 13. * 심사개시: 2021. 12. 15. * 게재확정: 2021. 12. 29.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교신저자(kh615@hanmail.net).

1) 김정순·김주성,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와 실천이행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제12권 12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적으로 약자인 환자의 소송 시 어려움 등을 해결하기 위해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술실 내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 이하 ‘CCTV’) 설치 의무화 법률 제정이 요구되었다.

찬성입장에서는 수술실이라는 폐쇄적 공간에서의 대리수술이나 성범죄 발생 등에 대한 대응책, 의료사고 관련 증거 자료 수집의 어려움, 사고 방지책으로서 CCTV의 우수성, CCTV 설치가 의무화가 아닌 자율일 경우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 필요성을 주장하였다.²⁾

이에 대해 의사단체 등 반대입장에서는 세계적으로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유례가 없다는 점, CCTV 설치·촬영이 의무화될 경우 고도의 집중력을 요하는 수술행위에서 의료진의 심리적 위축, 긴장감 유발 등으로 인해 수술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 될 수 있다는 점,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의사와 환자의 신뢰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 수술실은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하는 장소라는 점,³⁾ 의료인 전체를 잠재적 범법자이자 가해자로 인식하는 문제, 의료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⁴⁾

제19대 국회에서부터 시작된 관련 법안은 제21대 국회까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 개의 법안 발의로 연결되었고, 우리 사회에 뜨거운 화두가 되었다. 이를 반영하듯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료법」 개정안(이하 ‘이 법’)이 통과되었다. 이 법에 대한 평가 역시 상반되는 가운데, CCTV 설치 기준, CCTV 촬영 범위와 촬영 요청 절차,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의 구체적인 기준, 열람·제공의 절차, 촬영 정보 보관기준 등 중요한 세부 사항들을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2) 변지훈,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어린이 집, 수술실과 안면인식 CCTV의 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6. 57-58면.

3)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123면.

4) 임지연·오수현·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의료정책연구소, 2020.

수술실이라는 공간적 특성, 수술이라는 고도의 전문적이고 특수한 의료행위를 실시할 의료인의 입장, 안정적인 진료 환경이 환자의 의료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 개정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하위법령에 위임된 주요 세부 사항들의 방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 예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검토하여 제언하고자 한다.

II.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1. 법 제정 배경 및 경과

가. 제정 배경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 제38조의2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기관 내 수술 과정 중 의료사고가 발생하거나 비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이나 마취된 환자에 대한 성범죄 등 불법행위가 발생한 경우에 있어서도 외부와 엄격히 차단되는 수술실이라는 장소의 특성으로 인해 의료과실이나 범죄행위의 유무를 규명하기 위한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어렵다”는 시민사회의 문제의식에서 시작되어 그를 위한 적절한 해결방안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가운데 사회적 담론 과정을 통해 제정되었다.⁵⁾ 이 법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해당 수술 장면 촬영을 의무화함으로써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⁶⁾

5) 국회에서는 발의된 세 개의 법안에 대해 통합 심의하고 대안을 만들었다. 이례적으로 전문가 공청회를 개최하여 이 법 제정의 직접적 수범자인 의료계 단체의 의견을 확인하고 이 법 시행으로 인해 초래될 문제점에 대한 최소한의 확인 과정을 거쳤다.

나. 입법 경과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은 2010년대 중반 수술실에서 발생하는 대리수술이나 과실범죄의 은폐 의혹 등이 보도되면서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 거론되었다.⁷⁾ 이는 2015년 제19대⁸⁾ 국회에서 의료사고의 위험이 큰 수술 장면 촬영 의무화 법안을 시작으로 제20대,⁹⁾ 제21대에서 국회에서도 연이어 관련 법안이 발의되었다.

제21대 국회에서 가장 먼저 발의된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¹⁰⁾에서는 수술실을 운영하는 병원, 종합병원은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은 수술 장면을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CCTV 촬영은 의료진의 동의 없이 환자 또는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가능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장은 촬영된 영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의료분쟁조정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벌칙 대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어진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¹¹⁾에서는 의료기관은 종별 제한 없이 수술실이 있는 경우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를 설치·운영해야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등을 영상정보처리기로 촬영해야 하며 촬영 범위로 녹화뿐만 아니라 녹음까지 포함하였다. 촬영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며,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한 경우 의료기관 종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도록 하였다. 촬영의 대상은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인 상태로 제안하였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수술 등의 경과 확인을 위해, 환자 안

6) 제390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제1법안심사소위원회), 2021. 8. 23.

7) 전현욱,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형사정책(제33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96면.

8) 최동익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1.07. 발의, 의안번호: 13568.

9)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20543.

10) 김남국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24. 발의, 의안번호: 2382.

11) 안규백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31. 발의, 의안번호: 2615.

전 활동 수행기관이 업무수행을 위해 요청한 경우, 범죄의 수사, 공소 제기·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술실 내 영상정보처리기기¹²⁾로 촬영된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¹²⁾은 수술실 등 의료기관 내 CCTV 자율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의료기관 내 CCTV 설치를 촉진하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의료기관의 CCTV 설치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CCTV로 수술실 내 의료행위를 촬영하는 경우 환자·보호자의 동의뿐만 아니라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의 동의도 받도록 하고, 모든 의료행위를 촬영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고려해 환자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촬영해야 하며, 보유한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할 경우 벌칙의 대상이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중대한 생명, 신체, 재산상의 이익을 위한 경우, 의료사고 중재를 위해 중재원이 요청한 경우, 수사 또는 재판 과정에서 요청한 경우 CCTV 영상 정보 열람을 허용하도록 하였다.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안은 기존 두 법안이 지닌 의료인에 대한 기본권 침해 문제를 상당히 보완한 법안으로 환자 측(혹은 사회)의 요구와 의료인의 기본권 침해 사이에서 사회적 문제의식에 대한 적절한 해결방안과 이를 위한 입법부의 역할이 무엇일지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상과 같이 제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관련 세 개의 법안은 병합 심의 결과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의결되었다. 특히 법안 논의 단계에서 CCTV 설치비용 지원 근거, 영상정보 제공 시 의료인 동의 요건 포함, 원칙적 녹음 기능 제외, 영상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등이 포함되었다. 그러나 전신마취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에 CCTV 설치·운영을 강제화하고 촬영 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를 생략하였으며, 기본권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을 하위법령에 위임되었다. 동 법안은 2021년 9월 24일 공포되어 2년의 유예기간 후 2023년 9월 25일 시행될 예

12) 신현영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5. 발의, 의안번호: 6456.

정이다.

2. 개정안 주요 내용

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로 하여금 수술실 내부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전신마취 등 수술실 내부 CCTV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제38조의2 제1항).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해당 수술 장면을 CCTV로 촬영해야 한다(환자 요청이 있는 경우 수술 장면 촬영 의무화, 제38조의2 제2항 내지 제3항). 이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할 수 없는데, 이 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응급 수술 또는 위험도가 높은 수술의 시행,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 등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될 경우 CCTV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나 환자 및 해당 의료행위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하다.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저장장치의 네트워크와 분리,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관리 방안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영상정보 분실 등 안전조치, 제38조의2 제4항).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열람·제공할 수 있는 경우는 수사·재판 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중재 개시 절차 이후 환자의 동의를 받아 요청하는 경우, 환자와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였다(영상정보 열람 제공, 제38조의2 제5항).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르지 않고는 CCTV 촬영 정보를 탐지하거나 누출·변조 또는 훼손하여서는 안 되고, 이 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도 안 된다.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CCTV 촬영 정보의 열람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요청한 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영상정보 훼손 목적 외 사용 금지, 열람 비용 등, 제38조의2 제6항 내지 제8항).

의료기관의 장은 CCTV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영상정보 보관, 제38조의2 제9항).

III.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쟁점

1.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및 비용 지원 문제

「의료법」 개정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2023년 9월 25일까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해야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CCTV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또한 이 법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장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처벌 근거를 마련하였다. 즉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제63조),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시키거나 개설 허가 취소 또는 의료기관 폐쇄를 명할 수 있다(제64조 제1항 제6호). 또한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고(제66조), CCTV 설치 의무를 위반한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법 제90조).

즉 CCTV 설치 의무기관 및 의료기관장이 CCTV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처분과 자격정지 처분 그리고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세 겹의 제

재를 의미한다. 이 법은 비교적 강력한, 세 겹의 제재를 통해 입법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 것이다. 이러한 강한 제재로 의무화를 추진할 때에는 법률 강제로 인한 수범자의 경제적 부담 등 현실적 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안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4, 제36조) 논의 시 CCTV 설치비용 논의가 중요한 쟁점이었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¹³⁾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논의 시 설치비용 지원 근거도 함께 마련되었다. 2015년 정부에서는 유예기간 내 99%의 어린이집에 CCTV가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비용을 지원하였고 유예기간 내 설치비율은 99.9%가 되었다.¹⁴⁾ 추경을 통해 CCTV 설치비용 예산을 확보한 것인데, 이로 인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는 법률효과와 실효성을 갖게 되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경우 앞서 발의된 두 법안¹⁵⁾에 CCTV 설치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이 없었으나 2021. 5. 26.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소위원회가 주최한 공청회에서 수술실 내 CCTV 운영 시 우려되는 사안 중 하나로 설치비용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이를 계기로 설치비용 지원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다.

입법자들이 몇 겹의 제재를 부과하면서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통해 달성하고자 한 목적과 이 법의 실효성을 고려한다면 설치비용 지원 근거 규정 마련은 상당히 진일보한 측면이 있다. 설치비용 지원은 이 법 실효성의 직접적 요인이고 설치 의무 대상자인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도 설치비용은 이 법 수범에 있어 마주하게 되는 첫 번째 관문일 수 있다. 하지만 입법 논의 과정에서 예산, 설치비용 지원 범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고민의 흔적은 찾아볼

13) 국회, 제331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5. 2. 24., 4, 21, 23면.

14) 2015년 어린이집 CCTV 설치의 경우 정부에서는 어린이집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CCTV 설치비를 추경을 통해 확보하였고 유예기간 내에 약 99%의 어린이집에 설치될 수 있도록 설치비를 지원하였음. 어린이집 CCTV 설치 총 소요예산은 681억 원이었고, 이중 지방비는 40%에 해당하는 272억 원, 자부담은 20%인 136억 원이었음(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보도자료, 2015. 12. 22.).

15) 김남국 의원(의안번호:2382), 안규백 의원 발의 법안(의안번호:2615).

수 없었다. 이 법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강제화 하고 있는 국가가 없다는 부담감에서 시작된 사안이다 보니,¹⁶⁾ 이 법 운영으로 초래될 사후 문제에 대한 충분한 인식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의결되었다. 입법기관은 이러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까지 2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하지만,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문제점을 추적하기 위해서는 실제 CCTV 설치·운영으로 인한 문제점이 진단되어야 한다. 그를 위해서는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 지원 논의가 선결 과제이다. 이에 이 법 운영이 초래할 문제점 추적을 위해 예산 편성과과정에서 운영 방식, 설치 대수 등에 대한 계획을 실행할 수 있는 설치비용이 산출되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번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 법 운영에 소요되는 설치비용에 대한 예산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예산에 관한 논의는 다음 년도로 넘어갈 것이고 예산 확정은 23년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해 본다면 이 법 설치·운영을 통한 문제점을 파악할 수 있는 기간은 9개월이 채 되지 않을 것이다. 이에, 예산 책정 및 적용 시기와 이 법의 실효성을 고려하여 유예기간 연장 검토가 필요하다.

2.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

가. 촬영요건으로 정보주체자(의료인) ‘동의’ 생략

이 법에서는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실 내 설치된 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이때 정보주체자로서 환자와 동등한 위치인 의료인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촬영이 개시되어야 한다.¹⁷⁾ 이러한 법적 강제화는 촬영에 동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의 개인정보자

16) 미국 위스콘신주에서는 유방확대 수술 중 부분마취제 과다 사용으로 환자가 사망한 이후, “Julie Ayer Rubenzer Law”라고 알려진 수술실 카메라 설치에 관한 법안(Assembly Bill 863)이 2018년 1월 발의되었으나 상원 결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부결되었다(Wisconsin House Bill 863). 미국에서 CCTV 설치에 대한 법안은 통과된 사례가 없는데, 이는 정책입안자들의 기본권에 대한 깊은 고민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17)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기결정권을 비롯해 인격권,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헌법」 제37조 제2항에 근거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으나, 제한의 정당화 요인으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는 다른 기본권 영역에 비해 훨씬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¹⁸⁾ 특히 헌법재판소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헌법상 독자적인 기본권으로 인정한 후¹⁹⁾ 개인정보에 관한 문제는 헌법상 기본권 차원의 논의로 다루어지고 있다. 즉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만이 입법목적에 달성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정보 주체의 동의를 구하여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해 정보주체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권리²⁰⁾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한다.²¹⁾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촬영은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얼굴을 비롯해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이 함부로 촬영 당하지 않을 권리인 인격권을 침해하고,²²⁾ 상시적이고 지속적인 수술실 내 CCTV 촬영은 의료인의 업무공간에 대한 노동 감시로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원칙적으로 의료인의

수술 장면을 촬영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제63조). 그 시정명령을 의료기관장이 따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의 개설 허가를 취소할 수 있고, 의료기관에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도 있다(제64조 제1항 제6호, 제66조 제1항 제10호).

- 18) 정태호,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 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3, 19면.
- 19) 헌재 2005. 5. 26. 99헌마513 결정.
- 20)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대상이 되는 개인정보는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이 인격주체성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개인의 동일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한다. 또한 이러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헌재 2005. 7. 21. 2003헌마282 등; 헌재 2009. 9. 24. 2007헌마1092 등 참조).
- 21) 임지연·오수현·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분석 2019-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3면, 23면.
- 22)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초상권을 포함한 일반적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헌재 2014. 3. 27. 2012헌마652 참조).

동의 없이 촬영이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²³⁾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 생략은 기본권 침해와 관련하여 추후 많은 문제를 초래할 것으로 이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시행령 마련 시 동의 요건 생략에 대한 보완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나. 촬영 요청 권한

이 법은 CCTV 촬영 요청권자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법의 목적은 수술실 내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예방함으로써 환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러한 입법 배경, 취지, 목적 등을 고려할 때, 이 법의 보호 범익은 촬영 대상이면서 전신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인권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이다.

환자의 보호·권리 범위와 환자 보호자의 보호·권리 범위를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촬영 요청권자로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를 병렬적으로 나열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즉 CCTV 촬영 대상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측면에서 촬영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권한이 인정되어야 한다.²⁴⁾

CCTV 촬영 요청 권한에 대해 원칙과 예외를 구분하지 않을 경우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동의 없이 보호자의 요청만으로 촬영해도 되는 것인지, 환자가 촬영을 거부하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한 경우 촬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인지에 대해 혼란이 야기될 것이다. 또한 의료기관장이나 의료인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의하지 않고 임의로 CCTV를 촬영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3) 전현욱,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형사정책(제33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191면.

24) 「의료법」 제24조의2는 수술당사자인 환자의 의사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해 “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을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하고 동의” 받도록 하고 있다. 의사가 받아야 할 동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이며,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환자를 대신해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제88조 제3호). 법률의 모호성으로 중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의료인을 포함해 의료현장에 혼란이 가중될 것이다.

그러므로 시행령 논의 단계에서 촬영 요청 권한의 원칙과 예외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정보주체 당사자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위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 환자 보호자의 요청으로 CCTV 촬영 의무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환자 보호자의 범위와 자격, 그 권한을 명확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현행 「의료법」은 환자 보호자의 자격과 권한, 그 범위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다.²⁵⁾ 일부 환자에 준하는 일정한 동의권²⁶⁾을 보호자에게 부여하기도 하나, 보호자는 법률적 권한 없이 사실적으로 환자를 간호하는 자²⁷⁾로 의료현장에서는 환자의 가족 외 간병인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여 보호자의 범위는 가족 이외의 자로 폭넓게 이해될 수 있다.

「의료법」 제24조의2에서는 의료인이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설명과 동의를 받아야 하나, 환자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에게 설명과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정대리인 개념의 모호성으로 인해 현재 의료현장에서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²⁸⁾ 이 법의 CCTV 촬영 대상은 환자의 나신으로 영상 유출 시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는 가늠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환자 보호자의 범위가 좁게 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향후 시행령 논의 단계에서 보호자의 개념과 범위, 그에 따른 보호자의 자격과 범위에 대해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촬영 요청 권한 행사는 촬영 요청권자인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청 절차에 따라 촬영 개시 의무가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25)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대행결정권과 공동 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제20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49면.

26) 「의료법」 제47조의2(입원환자의 전원), 「의료법」 제21조의2(진료기록부 송부 등) 제1항에서는 진료와 관련하여 환자 보호자에게도 환자에 준하는 동의권을 인정해주고 있다.

27) 「의료법」 제4조의2(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제24조(요양방법 지도)에서의 보호자는 간호·간병을 해주는 자를 의미한다.

28) 의협신문, “의료법에서 설명의무 어디까지? ‘법정대리인’ 보호”, 2021. 7. 12.

(http://www.doctors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0229&sc_word=%EB%B2%95%EC%A0%95%EB%8C%80%EB%A6%AC%EC%9D%B8&sc_word2=).

수술실 내 CCTV 촬영 대상은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로 수술 장면은 민감 정보에 해당한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에게 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민감정보 처리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수술 장면 촬영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촬영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에 시행령 논의 단계에서는 이 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의 취지를 고려하여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요청 절차를 분리하여 별도로 마련해야 한다.

3.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이 법은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였다. 다만, 수술이 지체되면 환자의 생명이 위협하여지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는 경우,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상 수련병원 등의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영상 촬영을 거부할 수 있다.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보건복지부령에 의거 정당화 사유가 마련될 수 있다.

수술실은 고도의 전문적이고 비교적 위험도가 높은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의료인에 따라서는 수술행위 자체에 대한 부담감이 클 수 있다. 여기에 영상 촬영에 대한 부담이 더해질 경우 수술행위의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수술실 내 영상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사에게 촬영 거부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심리적 위축과 긴장으로 수술 과정에서 과실 발생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 수술 이외의 비침습적·대체적 방식으로 치료 방법을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²⁹⁾ 이는 환자에게 치료 효과가 나은

29) 김성은·최아름·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제22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124-125면.

의료제공의 기회가 박탈되는 것으로, 이는 사회가 얻는 공익보다 위해가 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CCTV 촬영거부 정당화 사유의 범위는 넓게 인정될 필요가 있다. 특히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CCTV 설치로 인해 초래될 의학발전 저해, 소극적 진료 초래, 외과 중심 필수과 기피 현상³⁰⁾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CCTV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료인의 촬영거부권 또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이 법은 촬영 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있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규정이 없었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시행령 논의 시 정당화 사유 규정은 폭넓게 인정되도록 검토되어야 한다.

4.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이 법은 의료기관의 장이나 의료인이 수술하는 장면을 촬영하는 경우 녹음 기능은 사용할 수 없으나,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녹화뿐 아니라 녹음 기능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다. 또한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촬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지 않고, CCTV 설치 기준, 촬영 범위, 촬영 요청 절차 등을 시행령에 위임하였다.

먼저 환자 및 정보 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 녹음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있어 영상정보처리기기에 대한 관리, 보호 등 일반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관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25조 제5항에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 조작하거나 녹음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³¹⁾ 또한 제38조의2 제11항 역시 「의료법」에 정한 것 외에

30) 메디게이트뉴스, “수술실 CCTV 설치, 외과계 전공의 기피로 수술대란 혹은 의료대란 우려”, 2021. 7. 2. (<http://medigatenews.com/news/2199764195>).

청년외과, “수술실 CCTV 설치법에 발길 돌리는 외과 지원자들... 기피 심화”, 2021. 9. 15.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14602>).

31) 녹음 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처벌 대상이 된다(「개인정보 보호법」 제72조(벌칙)).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 역시 어린이집 CCTV 운영 시 녹음기능 사용을 금지함으로써 기본권 침해 최소화를 위한 조치를 취하였다.³²⁾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이 법의 녹음 기능 허용 규정은 삭제될 필요가 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와 촬영에 관한 기본 원칙 규정과 관련하여서는 「영유아보육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동법 제15조의4 제2항에서는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등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이 법 역시 정보주체 권리 보호를 위한 CCTV 설치·촬영 기본 원칙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즉 의료인 등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에 관한 선언적인 규정이 추가되어야 하고 이를 기반으로 하위법령이 규정되어야 한다.

한편 이 법은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적으로 관련될 수 있는 CCTV 설치 기준과 촬영 범위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 역시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 여기서 고려할 점은 수술실 내 CCTV 설치·운영이 불가피하더라도 수술실 내 CCTV는 당초 입법 목적대로 무자격자에 의한 대리수술 등 비도덕적·비윤리적 행위 근절 수준에 그쳐야 하고, 의료과실에 대한 막연한 의심과 분쟁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³³⁾ 즉 CCTV 촬영 영상이 의료과실 판명 혹은 의료과실 판단 목적으로 수술 장면을 근접 촬영하게 될 경우 의료계가 우려해 온 소극적·방어적 수술을 초래하고,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해가 될 수 있어 사회적 공익을 해칠 수 있다.

이에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의료인의 개인 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 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32) 현재 2017. 12. 28. 2015헌마994 결정.

33) 김성은·최아름·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제22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111면.

상세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동의에 의해 촬영이 개시되지만 현대 정보사회에서 정보주체에게 동의의 대상과 실제 발생하게 될 실제 악결과에 대한 인식적 역량은 충분하지 못할 수 있다.³⁴⁾ 원자력, 잠수함 등 기밀 등급이 높은 자료도 유출되는 현실을 고려³⁵⁾할 때 의료기관의 안전성 확보 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환자의 민감정보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그 유출로 인해 환자가 입게 되는 피해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CCTV 설치, 범위 등이 규정되어야 한다.

5. 영상정보 보안(안전 조치)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이 법은 의료기관장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CCTV 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또한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 조치로서 저장장치와 네트워크 분리, 개인정보 유출이나 정보의 오용·남용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관련 소프트웨어 프로그램³⁶⁾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기술적 조치들의 경우 CCTV 촬영 대상이 환자의 신체, 나신이므로 환자 정보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세부적이고 명확하게 마련될 필요가 있고, 의료기관의 장이 확보해야 할 기술적 조치의 범위에 따라 안전 유지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이 법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촬영한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 조치로는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 접속기록 보관 및 관련 시설의 출입자

34) 이상돈·전현욱, “정보이용동의 -정보적 자기결정의 새로운 차원-”, 고려법학(제4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98면.

35) 조선일보, “수술실에 CCTV 달자고? 현대판 ‘과놈티콘’에 스스로 들어갈 텐가 [아무튼, 주말] 조지 오웰의 ‘1984’로 본 ‘CCTV 의무화법’의 위험성”, 2021. 6. 23.

(<https://www.chosun.com/national/weekend/2021/06/26/GPWES6SOABHQ3ATGYXTZ2KVGGU/>).

36)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제9조 제2항 관련) 3.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물리적 조치에는 촬영된 영상 이용자(접근자), 제공자에 대한 제한과 촬영된 영상의 관리·폐기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법률로서 명확히 규정되어야 한다. 특히 의료기관에서 안전하게 영상정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관리할 인력이 필요하고, 이들에 대한 교육도 필요하다. 특히 관리 인력 수는 병원의 규모, CCTV 설치 수, CCTV 촬영 건수에 따라 달라지고, 촬영 요청이 많은 의료기관 일수록 인건비 부담이 클 수 있다. 또한, 의료기관이 영상 관리의 부담 등으로 영상 관리를 별도의 CCTV 영상 관리 업체에 위임하고자 하는 경우 위임이 가능한 것인지, 가능하다면 위임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데 이 경우 CCTV 영상 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

한편 의료기관의 안전조치에도 불구하고 정보 유출은 발생할 수 있는 문제이다. 촬영 영상이 유출된 경우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이행 사실에 대한 입증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된다. 영상이 유출될 경우 환자는 의료기관의 관리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즉 의료기관장 및 관리자는 처벌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환자의 건강 회복과 건강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시행된 수술의 영상이 의료기관의 안전 조치 의무에도 불구하고 유출된 경우 질병 치료와 환자의 건강회복에 집중해야 할 의료기관은 사후 법적 문제 등을 겪어내야 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이 과연 사회 전반의 공익을 위한 것인지, 의사와 환자 간 신뢰 회복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 것인지, 의료서비스 증진에 미치는 기대효과가 있는 것인지, 이 법 목적 달성에 기여하는 바가 있는지에 대한 실익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불필요한 분쟁으로 사회적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 조치 의무 사항과 준수 기준이 명확히 정해져야 하고 의

료기관의 안전조치 준수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전관리 매뉴얼이 하위법령에서 제안되어야 한다. 더불어 사회적 손실 예방을 위해 분쟁 발생 시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6.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

이 법은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분쟁의 조정 또는 중재 절차 개시 이후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요청하는 경우, 환자 및 해당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해 의료기관장의 영상정보 제공의무가 발생한다.

근로자의 근무 장소에 CCTV를 운영 중인 어린이집의 원장 단체는 학부모들의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상 요구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 소속 중재기구를 제안하였다.³⁷⁾ 이에 영상정보 열람 요청은 상기에 언급한 바와 같이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열람요청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 범위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즉 환자가 촬영된 영상 확보를 위해 수술에 참여한 의료인에게 열람 제공 동의를 요청할 경우 의료인의 열람 동의 거부권 행사에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이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수술에 참여한 보건의료인 중 영상정보 열람에 동의하지 않은 의료인에 대한 비식별화[모자이크(마스킹)] 처리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에서 자체

37) 구자연·정유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0, 121-122면.

적으로 비식별화 장비를 구입하고, 원장이 모자이크 처리를 직접 하여 수사기관에 영상을 제공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다.³⁸⁾

이에 반해 규모가 크고 수술을 많이 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열람 요청 건수 또한 많을 것으로 시행령 마련 시 영상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비식별화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의료기관장이 비식별화 조치 담당자를 별도로 두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비식별화 업무를 위임하는 형식으로 운영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 법에서는 의료기관의 장은 영상정보를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고 보관기준 및 보관기간의 연장 사유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이에 영상정보는 30일이 경과되면 자동 삭제되도록 해야 한다.³⁹⁾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될 필요성이 있다. 보관기간 연장 사유 마련 시 보관기준 연장 기산점에 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되어야 하며, 보관기간 연장도 개인이 아닌 기관이 요청한 경우로 한정해야 할 것이다.

IV. 결론

현대사회의 복잡·다양해지는 갈등 상황 속에서 영상정보처리기기 중 CCTV는 법적 분쟁 해결을 위한 유용한 도구로 인식되면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CCTV는 일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생활 및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부정적인 효과가 상존하는 기술임은 틀림없다.⁴⁰⁾ 그러나 수술실이라는 공간적 특성, 수술이라는 특수한 의료행위, 그 내부의 CCTV 설치와 안정

38) 보안뉴스, “어린이집의 경우에도 모자이크 처리 비용에 대해 논란이 있었음(어린이집 CCTV 영상 반출하려면 모자이크... 비용 문제는 해결 못 해”, 2021. 4. 23. (<https://www.boannews.com/media/view.asp?idx=96831>).

39) 이미 수술실 내 CCTV를 운영 중인 경기도 산하 의료기관의 경우 영상을 촬영하고 30일이 경과하면 영상을 자동 삭제하고 있다.

40) 변지훈,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석사학위 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0. 83면.

적인 수술실 환경이 환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 법으로 인해 실제 의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실시 예정인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진행될 하위법령 논의에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은 검토하고 제언하고자 하였다. 특히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건과 관련하여, 이 법의 보호 범익은 촬영 대상이면서 전신마취로 의식을 잃은 환자의 인권이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의 보호 대상 또한 정보주체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보호 측면에서 촬영 요청 권한은 원칙적으로 당사자인 환자만이 행사할 수 있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이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CCTV 촬영 거부 정당화사유와 관련하여, 이 법이 촬영 요건으로 의료인의 동의를 생략하고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규정이 없었다면 위헌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령 논의 시 정당화 사유는 폭넓게 인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계가 우려하고 있는 CCTV 설치로 인해 초래될 의학발전 저해, 소극적 진료, 외과 중심 필수과 기피 현상 등의 문제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CCTV 촬영에 상당한 부담감과 거부감을 가지는 의료인의 촬영 거부 또한 정당화 사유에 포함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과 관련하여, CCTV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제5항과 「영유아보육법」 제15조의5 제2항 제2호와의 상충을 피하기 위해 정보주체 모두의 동의가 있는 경우 녹음 기능 허용 규정의 삭제를 제안하였다. 또한 환자의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을 최대한 낮추고, 의료인의 개인정보가 과도하게 수집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CCTV 설치 위치, 화질,

수술실당 설치 대수, 촬영 방법 등에 관한 상세한 기준은 침해 최소화 원칙에 따라 마련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상정보 보안(안전 조치)의무와 처벌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촬영된 영상 정보 유출은 촬영 대상인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등 그 피해의 정도가 가늠조차 어렵고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안전 조치 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입증책임 부담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의료기관이 부담해야 할 책임 또한 크다. 이에, 안전조치 의무 사항과 기준이 명확하게 하위법령에 규정되어야 함을 제안하였다. 또한, 의료기관의 안전조치 의무 이행에도 불구하고 영상 유출이 발생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 간 분쟁으로 발생할 사회적 손실과 환자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정부의 역할에 대한 논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영상정보의 열람 제공 범위와 위반에 따른 처벌과 관련하여, 영상정보 열람은 권한 있는 자만 행사가 가능해야 할 것으로 영상정보 열람은 수사기관, 법원, 한국의료분쟁조정원만이 열람요청권을 가져야 함을 제안하였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4조 제2호에서는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와 더불어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정보주체의 기본권 보호 차원에서 의료기관장은 수술에 참여한 모든 의료인의 동의를 받은 후에 영상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대한 환자와 의사의 입장은 상반되었다. 그러나 수술실은 환자의 치료를 위해 의료인이 고도의 집중된 의료행위를 하는 공간으로 안정적인 수술실 환경은 환자의 의료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된 세부 내용이 충분히 논의되어야 하며, 이 법 입법 영향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보완도 필요하다.

[참 고 문 헌]

- 구자연·정유나, 『어린이집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에 대한 개선방안 연구』, 육아정책연구소, 2020.
- 김남국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07.24. 발의, 의안번호: 2382.
- 김민지,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고찰”, 『의료법학』 제20권 1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김성은·최아름·백경희, “수술실 CCTV 설치의 입법방향에 관한 소고”, 『의료법학』 제22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21.
- 김수정,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에서 환자 보호자의 법적 지위와 역할-대행결정권과 공동의사결정을 중심으로-”, 『의료법학』 제20권 2호, 대한의료법학회, 2019.
- 김정순·김주성, “수술실 간호사의 수술환자 안전관리에 대한 중요성 인지도와 실천이행도”,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12권 12호, 한국산학기술학회, 2011.
- 변지훈, 「CCTV의 활용 및 한계에 관한 법적 연구 -어린이 집, 수술실과 안면인식 CCTV의 운영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20. 6. 57-58면.
- 신현영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12.15. 발의, 의안번호: 6456.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1. 발의, 의안번호: 20543.
- 이상돈·전현욱, “정보이용동의-정보의 자기결정권의 새로운 차원”, 『고려법학』 제47권,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 임지연·오수현·안덕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문제점』, 정책현안 분석 2019-5,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20.
- 전현욱,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관한 규범적 검토”, 『형사정책』 제33권 1호, 한국형사정책학회, 2021.
- 정태호, “비디오감시의 헌법적 문제점 및 규율모델로서의 독일의 관련 법률적 규율에 대한 검토”, 대한변호사협회, 2003.
- 최동익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01.07. 발의, 의안번호: 13568. 국회, 제331회-보건복지위원회회의록, 2015. 2.

국회, 제390회, 제1차 전체회의, 2021. 8. 23.

국회, 제390회-보건복지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 2021. 8. 23.

보건복지부, “어린이집 CCTV 설치율 99.9%, 아동학대 사전예방 기대!”, 보도자료, 2015. 12. 22.자

[국문초록]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향후 과제

임지연(의료정책연구소 연구원)

김계현(의료정책연구소 연구위원)

2021년 9월 24일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조항(의료법 제38조의2)이 공포되었다. 개정된 「의료법」은 수술실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의료분쟁 발생 시 적절한 해결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2023년 9월 25일까지 전신마취 등 의식이 없는 상태의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고, 의료인의 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요청만으로도 수술장면을 촬영해야 한다. 해당 법안은 기본권 침해 최소를 위한 입법 장치를 법률에 규정하지 않고 하위법령에 위임하였다(제38조의2 제10항).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인 정책방안은 구체적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의 입법 배경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쟁점을 분석함으로써 하위법령 마련 시 검토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수술실 내 촬영 대상인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원칙 준수를 기준으로 촬영 요건, 촬영 거부 정당화 사유, CCTV 설치 위치, 촬영 범위·대상, 영상정보 안전 조치 의무와 처벌의 적절성 등을 검토하였다. 수술실 내 CCTV의 정보주체는 수술에 참여하는 보건의료인과 환자일 것으로 이들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인권 등의 침해를 최소화하면서 설치 의무화법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마련 시 고려되어야 할 사안을 제안하였다. 본 논문이 하위법령 논의 시 검토되어 정보주체의 기본권 침해 최소화 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주제어: 수술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법, 보건의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인격권

Future Tasks of the Law Forcing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Lim, Ji Yeun

Researcher, MD. in law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Kim, Kye Hyun

Researcher Fellow, Ph.D. in Public Health

Research Institute for Healthcare Policy of Korean Medical Association

=ABSTRACT=

On September 24, 2021, the new provisions(Article 38-2 of the Medical Service Act) mandatory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where the unconscious patient is operating such as general anesthesia. The revised medical law aims to effectively prevent illegal activities that may occur in the operating rooms and to promote appropriate resolution to medical dispute. According to the law,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unconscious patients, such as general anesthesia, must install CCTVs in the operating rooms by September 25, 2023, and film surgical scenes only at the request of patients and their guardians, regardless of the consent of the medical personnel. The bill delegated the legislative device to minimize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to subordinate statutes without stipulating it in the law.(Article 38-2(10)) The most realistic policy plan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the fundamental rights of patients is to prepare specific regulations.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legislative background and main contents of the amended CCTV installation bill, and suggests issues to be review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by analyzing major issues. It was reviewed based on compliance with the principle of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of information subjects in the operating rooms. The information subjects of CCTV are health professionals and patients. Suggesting issues should be considered when preparing subordinate

statutes so that the purpose of the CCTV installation law can be achieved while minimizing infringement of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 and human rights. It is hoped that this paper will be referred when discussing subordinate statutes and regulations to contribute minimiz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Keyword : Operating rooms, The bill mandating CCTV installation in operating rooms, Health professionals, Right of self-determ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ersonality rights